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0.12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 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※ 부적격 의심자 및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는 관련된 소명자료 및 부적격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| 구분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필수 | 인감증명서 | 본인 | -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: 아파트계약용(본인발급용)] |
| | 서약서 | - | - 접수장소에 비치 |
|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- | - 접수장소에 비치 |
| | 신분증 | 본인 | 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단, 여권의 경우 2020.12.21. 이후 발급 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|
| | 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포함)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 | 본인 | 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추가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본인 |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개명한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 일로 설정) |
| 1순위 가점제 당첨자 | 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포함) | 배우자 | -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-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|
|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-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 |
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-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 | 피부양 직계존속 (부양가족 산정 시) | -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 ※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"전체 포함"으로 발급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| -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위한 필수 제출 -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 일로 설정) |
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| -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 | 피부양 직계비속 (부양가족 산정 시) | -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 -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 일로 설정) |
|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| -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-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| |
| 생업중사 단신부임 | 단신부임 입증서류 (해외체류 관련 증빙) | 본인 |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중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및 파견,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|
|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세대원 | -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개명한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 일로 설정) 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장기간 해외체류 이력이 확인될 경우, 체류 국가 확인을 위하여 여권 제출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
| 대리인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본인 | -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: 서류제출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|
| | 위임장 | 본인 | -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장소에 비치 |
| | 대리인 신분증, 인장 | 대리인 | 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단, 여권의 경우 2020.12.21. 이후 발급 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|

※ 상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 합니다.
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